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1.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5. 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5. 24.

다. 상정일자: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1.6.11.)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위임사무 규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일부를 개정함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의 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 수임기관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조항과, 보건소장 및 구의회 사무

국장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조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바, 이는, 각각의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인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어 수임기관을 동장으로 하였으며 이는 2020년 8월 18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정보를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그 밖에 약무에 관한 사무 등 보건소 소관 위임사무의 개정은 약사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개정내용은 안전을 참고하기 바람.
- 위와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또한, 보건소 소관 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 규정의 삭제,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장이 수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 역시 지금까지 승급 업무를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첨부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21-57 |
|----------|-------|

발의년월일 : 2021. 6. .

발 의 자 : 장덕준의원 외 1명

## 1. 수정이유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위임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위해 보건소장의 권한이었던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보건소장에게 사무 위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표 중 행정관리국(총무과)란의 삭제된 수임기관 보건소장의 사무명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를 현행대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개 정 안                   |  |            |          | 수 정 안                   |  |            |          |
|-------------------------|--|------------|----------|-------------------------|--|------------|----------|
| [별표]<br>위임사무(제5조제1항 관련) |  |            |          | [별표]<br>위임사무(제5조제1항 관련) |  |            |          |
| 주관국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주관국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행정관리국<br>(총무과)          |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행정관리국<br>(총무과)          |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                         | <삭제>   |            |          |                         |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진보   | ○ <생략>     | 보건소장     |
|                         | 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구의회 내 진보, 휴직 및 복직<br>나. 구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구의회 내 진보, 휴직 및 복직<br>다. 구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삭제>   |            |          |                         | <삭제>   |            |          |